

# (사) 한국독성학회 독성전문가인증시험 운영기준

2005. 1. 제정  
2010. 1. 개정  
2012. 9. 개정  
2015. 11 개정  
2017. 11. 14 개정  
2018. 11. 8 개정

(사)한국독성학회정관 제4조(사업)의 제4항 “독성학 교육 및 시험을 통한 독성학자 인증”, 제7항 관련 국제학회 및 관련기구와 국제적 학문교류 증진, 교육인증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(독성전문가인증)의 제1항을 위해 독성전문가인증시험에 관한 운영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.

## 제1조(용어의 정의)

- ① “독성전문가”라 함은 한국독성학회 교육인증위원회에서 소정의 자격을 심사하여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.
- ② “독성전문가인증시험”(이하 ‘시험’이라 한다)이라 함은 교육인증위원회주관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전문시험을 말한다.
- ③ “독성전문가시험응시자”(이하 ‘응시자’라 한다)라 함은 독성전문가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독성전문가인증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.
- ④ “독성관련업무”라 함은 약학, 수의학, 보건과학, 의학, 식품학, 생명과학 등 독성학 관련분야에서 안전성 또는 유효성, 유해성, 위해성 등에 관련된 학술적 또는 연구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

## 제2조(응시자격)

독성전문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는 아래 각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정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한한다.

- ① 독성학관련 분야 (약학, 수의학, 의학, 보건과학, 의학, 식품학, 생명과학 등)에서 박사학위 소지자, 동 분야에서 석사학위 소지 및 관련업무 수행경력 5년 이상인 자, 또는 동 분야에서 학사학위 소지 및 관련업무 수행경력 8년 이상인 자
- ② 교육인증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응시자격 기준(별표1)에 해당하는 자
- ③ 회비 완납 회원인 자

## 제3조(응시자격의 심사)

- ① 교육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응시자격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교육인증위원 중 3인 이상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응시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.
- ② 교육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응시원서(별표2) 및 응시원서에 명시된 소정의 자료를 제출 받아 그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.
- ③ 응시자격은 실무위원회 구성원 중 2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부여된다.

#### 제4조(시험의 응시)

-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독성전문가인증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(별표2) 및 소정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교육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교육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교육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자격의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응시원서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## 제5조(인증시험 실시)

- ① 교육인증위원회는 매년 1회 전문가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별도의 협의에 의해 합의된 경우에는 그 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② 교육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시험의 사전고지, 시험실시, 감독, 시험관리 (시험문제의 선정, 배포, 수거 및 채점 등) 및 그 결과의 통보에 이르기까지 시험의 전반적 과정을 정한다.
- ③ 교육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고, 전문가명부에 등재하며, 한국독성학회회장과 공동명의로 인증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
#### 제6조(재인증)

- ① 교육인증위원회는 최초 인증 후 5년 마다 독성전문가에 대한 재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교육인증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독성전문가 재인증자격에 관한 기준(별표1)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재인증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.

#### 부칙

- ①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,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 응시자격 및 재인증 자격에 관한 기준

- ① 응시자의 자격은 응시원서 제출시 30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. 30점 취득 기간은 최근 5년간의 누적으로 정한다.
- ② 재인증 자격은 5년간 70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.
- ③ 정관에 명시된 학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시에 2회 재인증 이후 영구 인증으로 간주한다.
- ④ 포스터 및 논문 게재, GLP시험보고서와 관련된 점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.

|              | 점수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개인회원         | 5점     | 본 학회 정회원 (필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포스터발표        | 1~2점/편 | 1. 본 학회 초록<br>주저자/교신저자 (2점/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| 2. 독성학 관련 국제학회 초록<br>주저자/교신저자 (1점/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논문게재         | 2~8점/편 | 1. Toxicological Research<br>주저자/교신저자 (8점/편),<br>공동저자 (4점/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| 2. 독성학관련 SCI(E)이상<br>주저자/교신저자 (6점/편),<br>공동저자 (3점/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| 3. 독성학관련 기타 학술지<br>주저자/교신저자 (4점/편),<br>공동저자 (2점/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GLP<br>시험보고서 | 8점/편   | GLP 시험관련 시험책임자, 운영 책임자, 주요 참여자,<br>GLP 시험 관련 국책과제 연구책임자 등<br>* 이는 시험담당자 및 운영책임자의 서명날인이 된 GLP 최종 보고서 상에 기재사항으로 판단하며, 증명자료로 pdf 파일을 첨부함. |
| 학회참석         | 3점/회   | 본 학회 참석<br>본 학회주관 국제학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육참석         | 5점/회   | 본 학회 교육 참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3~6점   | 전문가 신규문제 입고 (3점/10문제, 20문제/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